

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영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번호 1369

발의년월일 : 2016년 8월 16일

발의자 : 최영수·남창진·성중기·
이숙자·김영한·김진철·
허기회·이신혜·김구현·
서윤기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의정활동의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·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나, 정책 업무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현행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로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함.
- 나.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변경함(안 제1조 및 안 제2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정책연구위원회”를 “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정책연구위원회”를 “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부칙

제1항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항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정책연구위원회”를 “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② 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」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정책연구위원회”를 “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</u> <u>설치·운영 조례</u></p>	<p><u>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</u> <u>설치·운영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의회의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 정활동의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·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<u>정책연구위원회</u>를 설치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정책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의회 <u>정책연구</u> <u>위원회</u>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	<p>제2조(기능) ----- <u>정책</u> <u>위원회</u>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사항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3. 미첨부 사유

- 의정활동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·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명칭을 현행 ‘정책연구위원회’에서 ‘정책위원회’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, 별도의 비용 수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최 영 수